



※ 이 감사결과는 감사당시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 의하여 수감된 내용으로 감사이후 관계법령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18. 11. 19 ~ 11. 23 ≡

고금면사무소 정기종합감사 결과



완 도 군
(기 획 예 산 담 당 관)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고금면은 2016년 10월 종합감사를 받은 이후 감사를 받지 아니하여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업무전반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감사주기 등을 고려하여 2018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감사 실시

2.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고금면
- 감사범위 : 2016년 10월부터 2018년 10월말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18. 11. 19. ~ 11. 23.(5일간)
-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3명

4. 감사중점사항

- 군수 지시사항 및 주요 민원처리 상황
-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 공사업무 설계·시공·준공검사의 적정성
- 민원업무 처리의 적정성 및 지방세 과세 누락사항
- 사회복지보조금 및 수당지급의 적정성
- 농지전용 및 사후관리, 각종 보조금지급 적정성 등

II. 감사결과

일반행정·민원분야 (4건)

1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

- 초과근무수당 3건, 128,590원을 중복 지급하였으며, 거점소독시설 근무에 대한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총 4건, 72,060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초과 지급받음

2 초과근무 업무 등에 관한 사항

- 지방행정6급 김00 외 2명은 2016. 6. ~ 2018. 10.까지 총 10회를 최종 퇴청자가 청사보안장치(무인경비)를 설정하였음에도 심야복귀 후 청사보안장치를 해제하여 근무한 사실 있다.

3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

- 안전건설과 지방전산주사 우00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2017년도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가를 사용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4 비밀 열람기록전 관리 소홀

- 비밀을 파기 시 비밀열람기록전을 비밀에서 분리하여 하단에 파기근거, 파기일자, 파기자, 확인자를 기재한 후 날인하여 따로 편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 5건, 2017년 2건 등 총7건의 Ⅲ급 비밀문서를 파기하면서 이를 보관하지 않는 등 보안문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회계분야 (5건)

1 행사운영비 집행 부적정

- 제419주년 충무공이순신 순국제 등 행사운영에 따른 참석 민간인 식비로 집행하였으나, 행사관련 실비는 행사실비보상금 예산과목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행사 운영비 예산과목으로 3건 6,300천원 등을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한 회계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 관외출장 증빙자료 작성 소홀

- 도서개발사업 여비지급 외 1건의 여비를 지급하면서 도서개발사업 추진 관련 토지주와 협의를 위하여 서울로 출장을 실시하면서 증빙자료(추진계획 등)를 첨부하거나 작성하지 않아 출장수행사항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없게 하였고, 또한 선거관련 협의차 목포 관외출장임에도 증빙자료 없이 관외출장 여비를 지급하는 등 여비지급에 대한 증빙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특근매식비 이중지급에 관한 사항

- 2016년도 6월~8월중 8건을 지출하면서 현금영수증 카드가 아닌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며 또한 급량비 중 특근매식비와 정기적으로 소액 예산 지출되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 미만)을 합산하여 1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7일 이내에 지출을 결정하여 해당 사업자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에도 '18. 5. 25. 개발담당 시간외근무자 급량비(3,4월분) 2개월분을 합산하여 1건으로 지출하는 등 특근매식비 지출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4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고금면에서는 업무추진비로 지출하면서 건당 50만원 이상 사용내역 2건을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아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세입분야 (1건)

1 수입증지판매대금 세입조치 지연에 관한 사항

- 2018년 1월 ~ 10월까지 총48건에 대하여 1일에서 최장 5일까지 세입조치를 지연하는 등 증지판매대금 세입조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복지분야 (1건)

1 경로당 및 경로복지센터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소홀

- 2016년 ~ 2018년 기간중 운영비로 지출이 불가한 각종 기부금, 노인회 회비 및 보일러 교체, 중식비 등으로 181건 47,431천원을 부적합하게 지출하는 등 '경로당 운영비 집행 지침'에 따른 경로당 운영비 집행에 대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건설행정분야 (1건)

1 이륜자동차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 취득세 납입대상 고금면 고금로 우0 외 2명의 취득세 납입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 번호를 부여하여 총 114,610원의 취득세를 징구하지 못하였고, 법률에 규정된 전자수입증지 6건 18,000원을 첨부받

지 아니하고 신고서 수리하였으며, 또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규정에 의거 구비서류(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이륜자동차 제작증(신규로 제작 조립한 이륜자동차),를 첨부하도록 되어있는데도 구비서류를 징구하지 않는 등 이륜자동차 등록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공사계약 분야 (3건)

1 건설공사 감독소홀 및 공사비 과다 집행

- 고금면 숲 가꾸기사업 외 2건 계약체결하면서 공사감독 및 정산관리를 소홀히 하여 7,320천 원을 과다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2 시설공사 선시공 후계약에 따른 관련 법률 위반

- 위 사업현황을 확인결과 고금면에서는 “고금 농상리 하수도 준설공사”을 추진(8,835천 원, 상원기업)하면서 실제 작업기간은 '18. 05. 00 이나, 계약은 '18. 08. 30에 체결하였고, “고금 도로변 유희지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5,225천 원, (주)자연조경)하면서, 실제 작업기간은 '18.06.01 ~ 06.04임에도 계약은 '18.09.03에 체결하여 계약업무규정상 업무처리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선시공 후계약을 하였다.
- 이로 인하여 예정가격의 적법한 산출의 방해로 정확한 계약금액 산출근거 오류로 인하여 예정가격계약업무규정에 의거 계약절차를 집행해야 함에도 작업의 시급성, 소액 등을 사유로 적정 업무처리절차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등 업무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고금국민체육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 고금면에서는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사용료는 전혀 징수되지 않고 있으며, 전기세, 수도세 등 일반관리비 명목의 예산 30,642천원(2016년~2018년)을 지출하는 등 국민체육센터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